

적합성평가 위반사례 파비와 함께 체크해보세요!



적합성평가 제도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을 유통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술기준 부합여부를 시험하고 인증(혹은 등록)받거나 자기적합확인을 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전파법 제58조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고,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무사항
(적합성평가 표시, 변경신고, 구비서류 보관 등)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합니다.

※관련규정 :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준수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에도 기술기준 (주파수, 출력, 대역폭,
전자파 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여 생산·판매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5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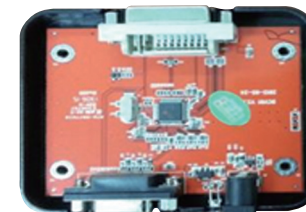
⚠ 위반사례 ⚠

- 전자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
 - ▶ **시정명령**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및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제출)과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2개월**
 - ▶ **3차 이상 위반시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및 서면관리·공개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자기적합확인인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적합성평가 시험을
수행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8조 참고



적합성평가 시



회로 변경 후



⚠ 위반사례 ⚠

- 단순 변경사항 (상호, 제조사, 제조국가, 모델명, 파생모델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관리·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 ▶ **시정명령** (변경신고 등)과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 기술기준 변경 (내부회로, 부품, 출력 등)을 단순변경으로 신고하거나 서면 관리·공개한 경우
 - ▶ **시정명령** (적합성평가 시험 후 변경신고 등)과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 기술기준 변경 신고 및 서면 관리·공개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한 기자재는 제품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자기적합확인을 한 기자재는 제품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 (KC마크, 관리번호, 모델명)를 부착하고, 추가로 설명서 제공 등으로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고

제품 또는 포장

상호 : AAA
기자재 명칭 : 00000
모델명 : BBB
제조년월일 : 0000년 00월
제조사 : 0000
제조국가 : 00

*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표시

제품 또는 포장

관리번호 : AAA-BBB
모델명 : BBB

* 자기적합확인인 적합성평가표시

설명서 등으로 제공

<http://www.rra.go.kr/selfform/관리번호>
상호 : AAA
기자재 명칭 : 000
제조년월일 : 0000년 00월
제조사 : 000
제조국가 : 00

* 자기적합확인인 자기적합확인표시

⚠ 위반사례 ⚠

-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 미부착
- 의무 표시사항 중 한 가지라도 미표시
 - ▶ **시정명령** (해당 기자재 적합성평가 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 보완 후 재부착)과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의무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적합성평가 관련 구비서류 보관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관련 서류들을 인쇄물 또는 전자매체로 보관해야 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2조 참고

보관해야 할 서류 : [적합등록] 적합등록신청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회로도(유·무선제품에 한함)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공통] 사용자설명서, 외관도(사진), 부품배치도(사진), 대리인 지정서, 파생모델 및 변경 관련 서류, 시험성적서(자기적합확인 후 시험성적서를 공개한 경우 생략 가능)

⚠ 위반사례 ⚠

- 구비서류 없이 적합등록필증 및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시 구비서류 미보관 등
 - ▶ **시정명령**(서류 보관)과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적합성평가 취소사례



⚠ 위반사례 ⚠

-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경우
- 적합인증대상 제품을 적합등록으로 신청
-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 제품(무선기능이 있는 기기 등)을 자기적합확인으로 공개한 경우
- 동일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등
 - ▶ **해당 기자재에 대한 수거·파기 명령이 내려지며, 수거·파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평가 관련 주요 연락처

- 적합성평가 제도(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1~4715)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판정(적합성인증과, 031-644-7534)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사후관리(사후관리과, 031-644-7471~7474)
 - 미인증 기자재 조사·단속(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 ※ 세부 사항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해당자료는 전파법 위반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안내하는 자료로서 모든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업무별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2.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후 적합성평가표시 미부착	시정명령 100만원	시정명령 20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300만원
3. 자기적합확인 후 적합성평가 및 자기적합확인표시 미부착	시정명령 5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7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100만원
4. 적합성평가 또는 자기적합확인 거짓 표시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5.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사항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5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70만원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100만원
6. 5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50만원	시정명령 70만원	시정명령 100만원
7.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관련 서류 미보관	시정명령 10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20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300만원
8.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 변경 관련 서면관리·공개할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50만원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70만원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100만원
9. 8항 외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관리·공개할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50만원	시정명령 70만원	시정명령 100만원
10. 부적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1. 국내대리인 허위 지정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 취득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13. 개선명령 등 조치 명령 미이행	적합성평가 취소 및 수거·파기		

※ 과태료 경감 조건

- 의견 제출 기한내 시정조치 완료후 서류제출 : 과태료 50% 감경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 납부시 : 내야 하는 금액의 20% 추가 감경

■ 벌칙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해당 기자재에 대한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조치 명령 미이행	

